

# 갑천2 트리플시티 엘리프

##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2-257호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11.07.]

■ 갑천2 트리플시티 엘리프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중 아래의 내용을 정정 공고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정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32페이지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하단 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내용 관련 일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가점계산 시 제외함</p> <p>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p> <p>3. 위 1, 2에 해당하는 경우, 귀국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계산함</p> </div>	해당 내용 삭제	<p style="text-align: center;">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상 3세대 구성 및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통해 판단하며, 해외체류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p>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견본주택과(<http://www.트리플시티엘리프.com>)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 견본주택 방문은 당사가 정한 시간대별 사전 인원에 따라 당사 홈페이지 (<http://www.트리플시티엘리프.com>)에서 사전방문접수한 고객에 한하여 방문 가능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은 당첨자에 한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고지할 예정입니다.
  - ※ 날짜 및 시간대별로 예약이 가능하나 특정일자(시간)의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일자별 접수가능 건수가 제한되고,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2BL)  
 ■ 공급대상 : 총 936세대 [전용면적 84㎡A 216세대, 전용면적 84㎡B 258세대  
 전용면적 119㎡A 145세대, 전용면적 119㎡B 139세대, 전용면적 119㎡C 80세대, 전용면적 119㎡D 80세대, 전용면적 122㎡ 18세대]

■ 갑천2 트리플시티 엘리프 견본주택(☎042-546-5567)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고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지입니다.

- 청약신청 시 ①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주택과 ②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은 다른 주택으로 구분되며, 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은 별도 광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갑천2 트리폴시티 엘리프 주관업체 안내

■ 사업주체 : 대전도시공사

■ 시공업체 : 계룡건설컨소시엄 (계룡건설산업(주), 파인건설(주), 대국종합건설(주), 신도종합건설(주), ㈜동방종합건설건축사사무소, 비에스건설(주), 선우건설(주))

■ 분양주체 : 계룡건설산업(주)

### 주요 공통 사항

■ 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에 의한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주택과 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주택과 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의 청약자격 조건이 상이하오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1.07.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분양주택(전용면적 85㎡ 이하)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 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며, 「주택법」제 57조의2에 의거해 거주 의무기간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공공분양주택(전용면적 85㎡이하) 청약 전 유의사항

-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229호(2019.12.16.)」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신청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 신청자로 청약하시는 분은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지역 및 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타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및 (민간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 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①, ② : 청약자 또는 세대원)	결과
부적격 예시	당첨 [①] + 당첨 [②]	①, ② 부적격
	당첨 [①] + 예비입주자 선정 [②]	① 부적격 / ② 예비입주자 추첨 불가
	당첨 [①] + 낙첨 [②]	① 부적격 ※ 낙첨자의 청약신청 이력으로 당첨자 부적격 영향

- 또한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 전체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의 당첨만 유효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우선공급 기준 1년 →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모집공고일 현재 까지 확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는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대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한 경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 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및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 사이트 :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소득, 세대주 요건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해당/기타)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6개월, 6회)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1순위, 6개월)	필요 (1순위, 6개월, 6회 이상)	필요 (1순위, 6개월)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불필요	이상)		6회 이상)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6회 이상)	않는경우)
자산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세대주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 1순위 입주자저축 자격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입주자저축 자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사항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계약세대의 경우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	3년

※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재당첨 제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분양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당첨된 주택의 구분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거주유기기간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 전매된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 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의심이 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계약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의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름]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1순위(해당/기타)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계약체결
일 정	2022.11.17.(목)	2022.11.18.(금)	2022.11.21.(월)	2022.11.25.(금)	2022.11.26.(토) ~2022.12.05.(월)	2022.12.26.(월) ~2022.12.31.(토)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견본주택 방문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번지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스마트폰앱	갑천2 트리폴시티 엘리프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에 대한 운영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예약 및 일정변경 시 추후 통보 예정
--	------------------------------	------------------------	------------------------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청약신청 시 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6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li> </ul>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남)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 재당첨 제한의 "세대"기준은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청약 제한사항 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규제**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b>10년간</b>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내지 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1항제12호 내지 제14호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동일 세대로 봄에 주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며, 입주자모집공고와 관계법령이 상충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1 공급규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등

## 1. 공급규모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2BL)
- 공급규모 : 지하 2층, 지상 최고 20층 15개동 총 936세대 중 공공분양주택(전용면적 85㎡이하) 474세대 : 84㎡A 216세대, 84㎡B : 258세대  
[특별공급 402세대(일반[기관추천] 72세대, 다자녀가구 47세대, 신혼부부 142세대, 노부모부양 23세대, 생애최초 118세대 포함), 일반공급 7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일 : 2025년 12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2.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공공 분양 주택	2022000788	01	84.9736A	84A	84.9736	25.5777	110.5513	66.3419	176.8932	56.4105	216	33	21	65	11	54	184	32	14
		02	84.9647B	84B	84.9647	25.8654	110.8301	66.3351	177.1652	56.4046	258	39	26	77	12	64	218	40	15
합 계											474	72	47	142	23	118	402	72	29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허용오차 내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 표현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제곱미터(㎡)로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84.9736A	84.9647B
약식표기	84A	8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84A	84B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1	12	23	
	장애인	대전광역시	4	4	8
		세종특별자치시	2	3	5
		충청남도	2	3	5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2	3	5	
	중소기업 근로자	3	3	6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대전광역시	1	-	1
		세종특별자치시	-	1	1
		충청남도	1	-	1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동일주소지 거주자	대전광역시	1	-	1
		세종특별자치시	-	1	1
		충청남도	-	1	1
	북한이탈주민	1	1	2	
	납북피해자	1	1	2	
시책추진(지역경제 활성화)	4	6	10		
소 계	33	39	72		
다자녀가구	21	26	47		
신혼부부	65	77	142		
노부모부양	11	12	23		
생애최초	54	64	118		
합계	184	218	402		

#### 4.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동 구분	층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2023.05.22		2023.10.20	2024.03.20	2024.08.20	2025.01.20	2025.06.20	입주시(30%)			
84.9736A	216	202동 3호라인 203동2,3호라인 204동3호라인 205동3호라인 206동2,3호라인 208동,209동전체 215동2호라인	1층	10	135,300,000	293,600,000	428,900,000	42,890,000	42,890,000	42,890,000	42,890,000	42,890,000	42,890,000	42,890,000	42,890,000	53,670,000	75,000,000	
			2층	14	138,200,000	300,000,000	438,200,000	43,820,000	43,820,000	43,820,000	43,820,000	43,820,000	43,820,000	43,820,000	43,820,000	43,820,000	56,460,000	75,000,000
			3층	14	141,100,000	306,400,000	447,500,000	44,750,000	44,750,000	44,750,000	44,750,000	44,750,000	44,750,000	44,750,000	44,750,000	44,750,000	59,250,000	75,000,000
			4~9층	84	144,100,000	312,700,000	456,800,000	45,680,000	45,680,000	45,680,000	45,680,000	45,680,000	45,680,000	45,680,000	45,680,000	45,680,000	62,040,000	75,000,000
			10층 이상	94	147,000,000	319,200,000	466,200,000	46,620,000	46,620,000	46,620,000	46,620,000	46,620,000	46,620,000	46,620,000	46,620,000	46,620,000	64,860,000	75,000,000
84.9647B	258	201동 4호라인 202동4,5호라인 203동1,4호라인 204동4,5호라인 205동4호라인 206동1,4호라인 207동4호라인 210동4호라인 212동4호라인 214동4호라인 215동1호라인	1층	14	134,200,000	291,400,000	425,60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52,680,000	75,000,000	
			2층	15	137,100,000	297,800,000	434,900,000	43,490,000	43,490,000	43,490,000	43,490,000	43,490,000	43,490,000	43,490,000	43,490,000	43,490,000	55,470,000	75,000,000
			3층	15	140,100,000	304,000,000	444,100,000	44,410,000	44,410,000	44,410,000	44,410,000	44,410,000	44,410,000	44,410,000	44,410,000	44,410,000	58,230,000	75,000,000
			4~9층	90	143,000,000	310,400,000	453,400,000	45,340,000	45,340,000	45,340,000	45,340,000	45,340,000	45,340,000	45,340,000	45,340,000	45,340,000	61,020,000	75,000,000
			10층 이상	124	145,900,000	316,700,000	462,600,000	46,260,000	46,260,000	46,260,000	46,260,000	46,260,000	46,260,000	46,260,000	46,260,000	46,260,000	63,780,000	75,000,000

#### ■ 공급금액 유의사항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융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인해 LTV에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됨에 따라 중도금 대출시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공급세대의 당첨자는 동·호수의 위치를 반드시 홈페이지 및 분양 카달로그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자, 분양 마케팅사 등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면적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해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상호정산 또는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 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완납 후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도금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도,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금액(주택가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 및 입주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 해제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 기본선택품목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이하 마이너스옵션이라 함) 제도가 적용된 주택으로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문, 바닥, 벽, 천장, 욕실, 주방,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적 품목 선택은 불가함.)

### ■ 마이너스 옵션

#### • 적용품목 및 범위

구분	품목	적용범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품목
일괄 선택	문	침실, 욕실	문틀상부마감선, 문선, 문틀 및 문짝(부속철물 포함)	세대현관문·방화문·주방발코니 문틀 및 문짝, 현관디지털도어록, 욕실문틀 하부씰, 목재문틀(가들), PL창호, 실외기실 그릴창
	바닥	거실, 주방, 침실, 드레스룸, 현관, 발코니, 팬트리	바닥재(강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 마루귀틀·디딤판	바닥방수,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시공부위), 에어컨냉매배관
	벽	거실, 주방, 침실, 드레스룸, 현관, 발코니, 팬트리	초배지, 벽체마감(벽지 및 타일), 각종 가구류, 발코니벽 도장	석고보드, 발코니난간, 콘크리트면처리 또는 시멘트몰탈(해당부위), 경량벽체, 단열재
	천장	거실, 주방, 침실, 드레스룸, 현관, 발코니, 팬트리	천장지, 반자돌림, 발코니천장 도장, 몰딩	천장틀 위 석고보드, 우물천장, 커텐박스
	욕실	욕실 1·2	바닥 및 벽마감, 천장재(천장틀 포함), 샤워부스, 욕실팬, 비데, 욕실장, 위생기구 (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수전류 등), 액세서리류, 조명 기구, 욕실폰, 콘센트, 각종 기기류	조적·방수공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주방	주방	주방가구 및 수납장, 액세서리류, 주방기기류, 벽체마감(타일 등), 싱크 수전 레인지후드, 주방TV, 쿡탑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
	조명 기구	거실, 주방, 침실, 드레스룸, 현관, 발코니, 팬트리	부착형 조명등기구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매입박스, 매입형 조명기구

###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구분	84A	84B
마이너스옵션 금액	32,026,000	31,478,000

### ■ 마이너스옵션 유의사항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실별·위치별 등 개별적인 선택이 불가하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 이후에는 자재발주, 시공 등의 문제로 추가 신청 및 일체의 계약변경(신규, 해지)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은 상호간의 공사 추진상의 차이점(바닥마감, 벽마감,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단위세대(기본형)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단위세대(기본형)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하자처리 확인, 시설물 인계인수 완료 후에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 분쟁 예방 및 시공부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계약체결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제공한 기본제공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통신,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식 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6. 추가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가능

### ■ 추가 선택품목

- 추가선택품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써,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이하 유상옵션이라 함)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공급계약 체결 시 유상옵션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유상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유상옵션 선택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하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공급 계약 체결 이후에는 추가 신청 및 일체의 계약변경(신규, 해지)이 불가합니다.
- 하기 유상옵션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항목의 A/S기간은 제품 제조사의 보증에서 따릅니다.

###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가격	계약금(10%)	잔금(90%)
		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84.9736A	84A	2,819,000	281,900	2,537,100
84.9647B	84B	4,024,000	402,400	3,621,600

##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공급금액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 이후에는 자재발주, 시공 등의 문제로 추가 신청 및 일체의 계약변경(신규, 해지)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 제거 및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개별 확장에 따른 법령 위반, 하자, 인접세대의 민원,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추가 시공되어 침실 및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 및 결로가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 제기불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므로,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1, 다용도실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비확장의 경우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수 배관노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전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유상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재 등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으며, 주택형·타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타입	선택안	실내기 대수	설치위치	제조사	공급가격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선택1	3대	거실 + 주방 + 침실1	LG/삼성	5,490,000	549,000	4,941,000	
	선택2	5대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8,000,000	800,000	7,200,000	
	선택3	6대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9,220,000	922,000	8,298,000	주방스타일업 B 선택시 불가
84B	선택1	3대	거실 + 주방 + 침실1		5,560,000	556,000	5,004,000	
	선택2	5대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8,250,000	825,000	7,425,000	
	선택3	6대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9,480,000	948,000	8,532,000	

###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선택 세대에 한하여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 시 계약금 10%, 입주 시 잔금 90%를 납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계약 이후에는 자재발주, 시공 등의 문제로 추가 신청 및 일체의 계약변경(신규, 해지)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므로 위치 등을 확인 하신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과 관계없이 각 실에 냉매매립배관(거실 : 스탠드형, 침실 1:2:3, 알파룸 : 벽걸이형) 및 콘센트가 기본으로 제공·설치됩니다. (주방에는 벽체냉매 없음) 다만,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알파룸은 냉매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별도의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와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무선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가동 시 발생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피난공간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

(단위 : 원)

구분	품목	제조사	내용	설치 위치	대상 타입	공급가격	계약금(10%)	잔금(90%)	
						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1	거실 벽 스타일업		거실 : 포세린타일(600*1200)→ 세라믹타일(1200*2400)	거실	84A	2,480,000	248,000	2,232,000	
			거실 : 포세린타일(600*1200) → 세라믹타일(1200*2400) 부부욕실 후면 복도 : 도배 → 세라믹타일(1200*2400)		84B	4,730,000	473,000	4,257,000	
2	거실/ 주방 바닥 스타일업		거실+주방+복도 : 강마루 → 포세린타일	거실+주방+복도	84A	1,300,000	130,000	1,170,000	
					선택1. 주방 스타일업 B 미선택 선택2. 주방 스타일업 B 선택	1,350,000	135,000	1,215,000	
3-1	주방 스타일업 A		주방 벽체 : 도기질타일 → 엔지니어드스톤 * 3-2 주방스타일업B 선택시 선택불가	주방	84A	1,200,000	120,000	1,080,000	
					84B	1,200,000	120,000	1,080,000	
3-2	주방 스타일업 B		주방 확장+팬트리 추가(알파룸삭제)+주방 장식장 추가+디자인 상부장 주방 벽 엔지니어드스톤+후라이팬전용서랍 인덕션(쿠첸)+아일랜드형후드+조명스타일업 주방 장식장 추가+디자인 상부장 + 주방 벽 엔지니어드스톤+후라이팬전용서랍+인덕션(쿠첸+&아일랜드형후드+조명스타일업	주방 +알파룸 주방	84A	6,000,000	600,000	5,400,000	
					84B	4,900,000	490,000	4,410,000	
5	알파룸 수납강화형		알파룸 → 팬트리 + 가구 문짝	알파룸	84B	820,000	82,000	738,000	
7	조명 스타일업		라인형 조명, 디밍(거실적용, 주방제외), 온오프 * 3-2 주방스타일업B 선택시 선택불가	거실 +주방	84A	960,000	96,000	864,000	
					84B	960,000	96,000	864,000	
8	드레스룸 스타일업		포스트형 드레스룸 가구 → 벽판넬 드레스룸 가구 + 제습기	드레스룸	84A	5,400,000	540,000	4,860,000	
					84B	3,500,000	350,000	3,150,000	
10	의류관리기	LG전자	모델명 : S5BBPU	드레스룸	전타입	2,100,000	210,000	1,890,000	
11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및 수납가구	LG전자	냉장 : BCS41AA1(베이지/클레이브라운) 김치 : BC3K11A(베이지/클레이브라운)	주방	84A	7,100,000	710,000	6,390,000	
					84B	6,430,000	643,000	5,787,000	
12-1	인덕션	쿠첸	모델명 : CEN-IF3A0NBA * 3-2 주방스타일업B 선택시 선택불가	주방	전타입	500,000	50,000	450,000	
12-2	하이브리드	헬러	모델명 : TH-3210D * 3-2 주방스타일업B 선택시 선택불가			2,730,000	273,000	2,457,000	
13	식기세척기	LG전자	모델명 : DUBJ2EA(네이처 베이지)	주방	전타입	1,690,000	169,000	1,521,000	
14	스마트 복합환풍기	힘펠	모델명 : FHD-P150S1	공용욕실	전타입	430,000	43,000	387,000	
				부부욕실	전타입	530,000	53,000	477,000	
15	안전방충망	원가드	안전망 창호 전체(안방분합창, 실외기 그릴창 제외) 안전망 창호 전체(안방분합창, 실외기 그릴창 제외)	전실	84A	1,680,000	168,000	1,512,000	
					84B	1,530,000	153,000	1,377,000	
16	열차단필름	후퍼 옵틱	거실, 침실2, 침실3 거실, 침실1(발코니 만), 침실2, 침실3, 주방, 다용도실, 드레스룸, 알파룸 거실, 침실2, 침실3 거실, 침실1(발코니 만), 침실2, 침실3, 주방, 다용도실	부분 전실	84A	2,330,000	233,000	2,097,000	
						3,870,000	387,000	3,483,000	
				부분 전실	84B	2,410,000	241,000	2,169,000	
						3,550,000	355,000	3,195,000	
17	무기질 도료시공	SEF	침실1,침실2,침실3, 파우더룸, 드레스룸, 알파룸 침실1,침실2,침실3, 파우더룸, 드레스룸 침실1,침실2,침실3, 파우더룸, 드레스룸, 알파룸	전실	84A	선택1. 주방 스타일업 B 미선택시	3,400,000	340,000	3,060,000
						선택2. 주방 스타일업 B 선택시	2,800,000	280,000	2,520,000
					84B	3,200,000	320,000	2,880,000	

■ 유상옵션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 가능)

- 거실/주방 바닥스타일업의 포세린타일은 119, 122타입과 상이하며 시공위치는 거실+주방+복도 바닥이고, 미선택시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벽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타일 시공은 타입별로 시공위치가 상이하며, 미선택시 거실과 동일한 실크벽지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 복합환풍기 선택 시 환기, 온풍, 제습 등의 기능이 있는 스마트복합환풍기가 공용욕실, 부부욕실에 설치되며 미선택 시 일반 환풍기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유상옵션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전제품은 타입별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업 A 옵션 선택 시 벽체 타일시공에서 엔지니어드스톤으로 변경 시공되며, 자재 특성에 따라 벽체 및 상판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업 A 옵션 선택 시 벽체 시공에 따른 자재 이음부위가 발생하며 현장 시공 시 이음부위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색 및 단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복합창 옵션 선택 시 기존 방충망이 제거되고 안전기능이 추가된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주방 스타일업 B 옵션 선택 시 주방가구 시공은 타입별로 디자인이 상이하며, 상부장이 천장과 이격시공되므로 각종 배관 배선등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기질 도료 시공 옵션 선택 시 각 세대별 침실 및 드레스룸에 시공하며, 최종 마감재 시공 전 무기질도포가 시행되므로 육안상 확인 어렵습니다. 이는 최종 마감재 등을 철거 후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열차단필름은 전실 선택 시 외창 기준으로 시공되며, 침실1(안방) 분합창은 미시공 되며, 부분옵션 선택시 거실 외창, 침실2, 침실3 외창에 시공됩니다.
- 빌트인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는 각 타입별 지정된 색상만 선택가능 합니다.
- 유상옵션 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상기 유상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달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 옵션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마감두께, 벽체,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폭,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계약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7.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납부시기	금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계약 시	공급금액의 10%	하나은행	당첨자 발표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추후 안내예정
잔금	입주 시	공급금액의 90%			

### ■ 유상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납부시기	금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계약 시	공급금액의 10%	하나은행	당첨자 발표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추후 안내예정
잔금	입주 시	공급금액의 90%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유상 옵션납부계좌는 각각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입금증 및 계좌이체 확인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좌 입금(예시 : 2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2010101홍길동" 기재)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 청약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공공분양주택(전용면적 85㎡이하)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 청약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금회 공급하는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의 특별공급·일반공급과 민영주택(전용 85㎡초과 주택)의 특별공급·일반공급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본인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먼저 당첨된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당첨 주택의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 중복청약**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내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을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인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인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1세대에서 1사람만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 특별공급 중복청약**

- 공급주택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

■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복청약**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확정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으로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하며,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는 일반공급에 중복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 내 중복 당첨 처리 예시**

A : 공공주택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      A의 세대원 : 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  
 ①A는 당첨으로 재당첨제한을 받긴 하나, A의 세대원이 민영주택의 당첨자이기 때문에 A의 세대원은 정당 처리  
 ②A의 세대원이 재당첨제한을 받는 민영주택에 당첨됐기 때문에 A는 재당첨제한으로 부적격 처리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25조에 의거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1년 이상(2021.11.07.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229호(2019.12.16.)」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신청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 신청자로 청약하시는 분은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지역 및 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세대원 중 주택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1.07.)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대전광역시)	100%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1.11.07. 이전부터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거주(2021.11.07.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분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 미만(2021.11.08.이후) 거주자 포함

-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 (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대전광역시 1년 미만,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2.11.25.)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안내한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을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5조 포함)·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가능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07.)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http://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2년식 자동차를 2021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 천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자동차	35,570 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li> </ul> </li> <li>•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사업 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07.)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생애 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일반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신혼 부부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일반공급 (3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가점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4,967,147	5,760,647	5,860,858	6,223,860	6,586,862	6,949,865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453,753원) 추가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단, 임신 중인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로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로 포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 기준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 특별공급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표4>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 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 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 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 근로소득 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

단→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 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 보험 보수월액)의 소득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별도 양식)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농농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인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07.)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3항에 따른 지역(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장기복무군인 제외)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35조 제1항 제27호의2의 도시 활력 증진/도시 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 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 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필요없음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의사상자(의사자 유족),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시책추진, 중소기업근로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해당기관)

- 국가유공자(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장애인(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의사상자(의사자유족)(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충청남도 사회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북한이탈주민(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납북피해자(통일부 이산가족과), 다문화가족(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가족과), 시책추진(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중소기업근로자(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세종자치특별시)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6개월)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기한 내에 사업 주체로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2.11.17.)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300%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07.) 현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혼, 재혼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이하인 분

(단위 : 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6개월)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거주지역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대전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 → 그 외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 거주자)
- ②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중복 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자의 경우 무효 처리)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어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 기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대전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07.) 현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혼인신고일 기준이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1.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 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수도 불가함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 태아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등을 통해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단, 태아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단위 : 원)

공급유형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 부부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일반공급 (3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의미함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6개월)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의 100% 이하인 자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하며, 30%는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에게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
  - 월 평균 소득 100%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순위 → ② 거주지역(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 그 외 지역 거주자)에 의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순위 내에서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
  - 월 평균 소득 130%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40% 이하)인 분을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순위 → ② 거주지역(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 그 외 지역 거주자)에 의하여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항 목		기 준	비 고
(가)	가구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이하인 경우 : 1점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거주기간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의 연속 거주 기간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3세 미만)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 1점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유의사항 : (다) 항목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로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가점항목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은 대전광역시에 연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신청자의 가점항목 오류로 인한 점수 재산정 시 주택형별 최저가점을 초과하였을때만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동점 또는 이하일 경우 부적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가점계산 시 제외함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3. 위 1, 2에 해당하는 경우, 귀국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 '(가) 가구 소득'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배우자 소득 없는 경우)	4,967,147	5,760,647	5,860,858	6,223,860	6,586,862	6,949,8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예비)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다)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층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 신청, 미 예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중복 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자의 경우 무효 처리)

##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07.) 현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단,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부양에서 제외)

제외, 신청 불가)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과 피부양자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단위 : 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6개월)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내 지역 거주자) → ②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변경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중복 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자의 경우 무효 처리)

##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07.) 현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분

(단위 : 원)

공급유형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일반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6개월)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는 공급신청자가 속해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자 포함) 전원과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신청자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신청자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상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중 만 19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합산합니다. (세대원의 실종, 별거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에서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 당첨자 선정방법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 (소수점 이하는 올림)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30%는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인 자에게 일반공급합니다.
  - ① 1단계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70%) -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② 2단계 일반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30%) -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거주지역(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대전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 → 그 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 거주자) → ②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중복 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자의 경우 무효 처리)

## 6. 일반 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07.) 현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6개월)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초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경쟁 시 ① 순위(1순위→2순위) → ② 거주지역(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대전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 → 그 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 거주자) → ③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해당지역(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와 그 외 지역(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을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 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 해당사항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
-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
-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4

### 신청시 확인 사항

#### 1. 당첨사실 조회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공동인증서 로그인→조회기준일 입력→ 검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6개월)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2.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2.11.25.)로부터 3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제4항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권을 해당 전매제한기간 내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되며”, 「주택법」제64조 제5항 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진행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이 명시됩니다. 단, 「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에 따른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에 한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전도시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3.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p>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p> <p>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p> <p>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p> <p>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p> <p>※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p>
신청방법	<p>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p> <p>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표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p>

**5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li> <li>다자녀가구</li> <li>신혼부부</li> <li>노부모부양</li> <li>생애최초</li> </ul>	2022.11.17.(목) (09:00 ~ 17:30)	인터넷 청약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국민은행 가입자 포함)</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 Home" 검색</li> <li>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 (건본주택[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번지] : 10:00 ~ 14:00)</li> </ul>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순위 (해당/기타)</li> </ul>	2022.11.18.(금) (09: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국민은행 가입자 포함)</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 Home" 검색</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접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순위</li> </ul>	2022.11.21.(월) (09:00 ~ 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 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 '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3.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 청약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li> </ul>	
		<b>인감증명 방식</b>	<b>본인서명확인 방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 여권 등)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 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6 당첨자 선정 및 발표

### 1. 당첨자 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2022.11.25.(금)</li> <li>•확인방법</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일반공급	1순위 (해당/기타지역)	
	2순위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11.25.(금) ~ 2022.12.04.(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11.25.(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7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구비서류

### 1.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

구분	서류제출 기간	서류제출 방법 및 장소	비고
<b>당첨자 서류제출</b>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예비입주자 별도 안내예정	<b>2022.11.26.(토) ~ 2022.12.05.(월)</b> <b>10일간 (10:00 ~17:00)</b>	•제출 방법 : 방문 접수 •제출 장소 : 갑천2 트리폴시티 엘리프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번지) ※ 사전방문예약제 운영(예정) : 홈페이지 안내 예정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신청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으로, 별도 안내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첨 및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 당첨자(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검증 서류 미제출'로 당첨포기로 처리합니다.
-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 후, 추후 폐기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자격검증이 불가할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 하여 당첨자로 분류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 85㎡ 이하 공공주택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구비서류 안내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0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표6> 특별공급/일반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제출 기간 내 반드시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무주택 입증서류를 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신청자 구비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자산 조회용)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동의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원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상세"로 발급)	
	○	복부확인서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기관 추천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신청자격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신청자 구비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신청자 구비
	○	소득증빙서류	배우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3세대이상 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직계비속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신혼 부부 특별 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기본 주택 비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증빙서류	이상 세대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 구비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신청자 구비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건본 주택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비사업자의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신청자 구비
	○	소득증빙서류	이상 세대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 구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사실 확인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직계비속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피부양 직계비속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비사업자의 경우	건본 주택 비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본인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발급처 : 해당직장,세무서)	신청자 구비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증빙서류	이상 세대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직계비속	•공고일 현재 혼인증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하	



		(상세)	속	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비사업자의 경우	건본 주택 비치
일반 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신청자 구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 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	○	위임장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 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 신청자 구비
	○	인감도장	본인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자 구비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표7> 특별공급 공통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건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본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8>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 내역 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 분에 한 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또한,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체결**

**1.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체결 기간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2.12.26.(월) ~ 2022.12.31.(토) / 6일간 (10:00 ~ 17:00)	견본주택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번지

-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2.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하나은행	당첨자 발표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추후 안내예정

-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계좌의 경우 상기 계좌와 상이하거나 가상계좌로 관리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의 경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 (입금 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자명 예시 : 2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2011001홍길동' / 201동 201호 계약자 홍길동 → '2010201홍길동'
- 계약체결 시 이체 확인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 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3.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 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본인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전자수입인지	본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납부)를 구매하여 계약체결시 반드시 지참해주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시까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의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부적격 당첨 및 대출 관련 사항

### ■ 부적격 및 서류제출 관련 세부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현장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며,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 및 계약 시 사업주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 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설계 및 시공관련 개선, 구조개선, 법령 및 지자체 지침 준수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단,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령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 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 일로부터 발생 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을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10%)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완납 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약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가의 총 60% 내에서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에서 대납해주며, 입주 시 납부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 자세한 용자지원 부분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 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시 및 보상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9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1. 청약관련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사이버 견본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 사실, 소득·자산 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 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balconi 확장금액 및 옵션금액 등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다만, 중도금을 일부라도 납부한 후에는 사업주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법」 제48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 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 일반사항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 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된 계약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지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2022년 11월 02일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허가 승인조건 이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최종 준공 도면에 의하여 시공 됩니다.
- 계약 전 단지 여건 (기반시설 위치, 분묘,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소음, 조망, 일조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 주변현황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세대 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연출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 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되므로 분양가에 포함되는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법정오차 범위 내 면적 증감에 대한 별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층별 공급금액이 상이합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지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도시 기반시설 계획 변경 등으로 규제 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단지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는 84A, 119B주택형의 확장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서 제공하는 분양홍보물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전에 주택형별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비확장 부분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건본세대, 분양홍보물,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공사여건 등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형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한 세대 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학교,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종 기반시설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신설 및 개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의해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급 계약해지(해제)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분양계약 체결 후 연2회 (반기 1회) 이상 입주예정자("계약자"를 말함)를 공사 현장으로 초청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통지는 설명회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설명회 당일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하지 않습니다.)

##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 가입하거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도어카메라 높이조정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낮았이조절 세면기, 미끄럼 뺀지 타일	
주방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 센서등	
기타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점자스티커	시각장애인

- 신청시기 : 당첨자(예비) 계약체결 기간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3.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구 및 단지여건

- 도안 갑천지구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설로 인하여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공사차량·기타 외 부인의 통행 등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안 갑천지구 주택사업과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갑천호수공원 및 공원 주차장이 단지 남측에 배치되어 있으며 공원 및 주차장에서 소음, 차량 매연, 빛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자는 당해 지구가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써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 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유치원용지, 연립주택용지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도안 갑천지구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안 갑천지구 내 및 지구 인근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편의시설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음.
- 본 지구 내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도안 갑천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사업지구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변경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초등학교는 기존학교 과밀로 신설 예정이며, 입주시기와 개교시기가 다를 경우 인근 초등학교 등에 배치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현장여건에 따라 건물의 구조안전을 위한 지하수위 조절을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수펌프 가동 시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일정의 관리비가 추가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펜스 또는 조경(울타리 등)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사인물,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망 침해 및 조명빛의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시설물로 인한 미관 지장,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세대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고층 빛 반사가 발생 할 수 있음.
- 태양광 발전설비는 발전 효율, 음영 간섭 여부, 타 설비와의 간섭 여부 등에 따라 재배치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과 차이가 날 수 있음.
- 아파트 세대 발코니 외부에는 몰딩 등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포함·배치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내 도로를 통해 진입됨.
- 단지 내 주민복지시설은 사용공간만 제공되며, 단지 내 관리사무소, 경로당,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등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조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여건을 확인 하신 후 청약에 임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시 경계(확장)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각각 대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요청을 할 수 없음.
- 아파트의 대지 일부(주출입구 및 차로 등)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발코니창호가 입면분할방식으로 시공되어(발코니 확장 시)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사 및 비상차량의 단지 내 이동시에는 보도를 혼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내에 펌프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설비가 설치되는 장소에서의 설비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매연 등이 발생하여 세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동 출입구 등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산책로, 부대복지 시설 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도등, 보안등, 조경등, 출차주의등, CCTV 등에 의한 소음 및 조명 빛의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어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CCTV는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지하주차장, 주민복지시설, 옥외 등의 주요 위치에 설치되며, 모니터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CCTV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민복지시설 등에는 무선AP가 주요위치에 설치되며, 공용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는 인터넷회선의 신청 및 관리비용이 발생됨.
- 본 아파트의 총 주차대수는 1,876대(장애인주차 58대 포함)이며 1세대 당 약 2.0대임.

-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 커뮤니티 시설 인근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이므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특성상 지하주차장,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 및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설비와 설비운영을 위한 배선, 배관이 노출 설치되어 있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시설(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놀이터, 보육시설, 경로당,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소음 및 실내 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아파트동 지하PIT에는 배수펌프가 설치되며, 유지관리 상 배수펌프 가동 시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D/A가 일부 동 및 보행동선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냄새에 의한 환경권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설계 배치 상 기계·전기 시설관련 급배기구,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해충,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음.  
(지상 쓰레기보관소에 인접한 동은 냄새, 소음 및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도로와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차량 진출입구는 2개소로 진출입시 진입구간의 교차로의 특성상 통행 시 병목현상 등에 따른 지체현상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 승하차시 회차를 해야함.
- 단지 차량 진출입구는 2개소로 진출입시 진입구간의 교차로의 특성상 통행 시 병목현상 등에 따른 지체현상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친환경계획을 고려하여 일부 상가주차를 제외한 단지 전체가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지상은 비상차량을 위한 동선만 계획되어 있어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201동·202동·205동·206동·207동·208동·214동·215동은 인근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접하고 있어 차량전조등 및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201동·202동·203동·204동·206동·212동·214동·215동은 부대복리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의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211동과 213동 사이 지하층에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지중개폐기가 단지 내에 설치됨.
- 세대 전기용 세대분전함은 침실 또는 알파룸에 설치되고, 통신용 통신단자함은 현관 팬트리 내부에 설치되며, 이로인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기계·전기·통신·소방 기구류의 마감재에 대한 제품제원, 위치, 높이, 수량 등은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 및 옵션 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상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뢰용 피뢰침이 설치됨.
- 201동 지붕에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가 설치되며, 시설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에 의거하여 202동·204동·207동·212동·214동 지붕, 지하1층 202동 통신실, 203동 통신실, 204동 통신실, 207동 통신실 등 지상 및 지하주차장 주요위치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 및 안테나가 설치예정이고, 이동통신 품질 등을 고려하여 본

공사시 위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시설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동 주변으로 재활용창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옥외운동시설과 수공간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에 게시되어 있는 모형, 단지 조감도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청약, 계약 체결하기 바람.
- 단지 내 조경계획(수목식재, 수경시설, 운동시설, 휴게공간, 조형물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과정 등에 따라 위치, 재료, 형태, 색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밴드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음.
-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및 보안등, 경관조명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저층세대의 경우 비상차로, 보행로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복리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외벽마감재 시공상 외부창호의 크기가 조정될 수 있음.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일부세대에서는 소음발생 및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 및 주거동의 위치 동별·향별·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의 저층부는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211동, 215동은 119A타입과 122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돌출발코니가 설치되어 하부세대에 음영, 상부세대에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음.
- 215동 전면, 근린생활시설2 지붕은 일부세대의 전유물로 사용할 수 없음.

#### ■ 공사 시행중 설계 및 시공변경 관련사항

- 조감도, 전시모형 및 견본주택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하며, 철거 전에 사진 및 비디오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는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자의 도산 등과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설계·시공 상의 개선을 위하여 계약자의 동의나 별도 통보없이 동급 이상의 품질과 유사색상 및 무늬를 가진 동사 또는 타사 제품으로 변경하여 시공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환기용급배기구, 전등, 콘센트, 통신단자,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주방기기, 욕실용품, 각종 기구류 등은 본 시공 시 제품사양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 유상옵션등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음.
- 각 세대 발코니에는 오·우수용 선홈통이 설치되어 있으며,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 등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및 피난공간에 설치되는 바닥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건축법에 의거 안방 발코니에 피난공간이 설치되며, 피난공간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됨. 하향식 피난구는 비상 시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덮개가 개방될 경우 경보음(해당세대, 하부층세대, 방재실)이 울리게 됨. 피난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장애물을 적치하여 비상 시 해당세대 및 상부층 세대의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조경 단지계획은 건축구조물의 완성단계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맞추기 위하여 설계를 재정비하므로, 견본주택의 단지모형·조감도·사업승인 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는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배관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 크기 또는 장내부 깊이가 축소되거나 천장에서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 피난공간에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설치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및 자동식 소화기 설치로 내부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주택형·유상옵션에 따라 변동)에 매립하여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으로, 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은 벽걸이형으로 설치됨.
- 월패드, 욕실폰의 국선용 전화통화 기능은 KT일반전화만 사용이 가능하고, 인터넷전화는 사용할 수 없으며, 스피커폰 방식으로 음질성능이 떨어질 수 있음.
- 주방TV는 인터넷회선을 사용하여 네이버 CLOVA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선용 전화통화 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원격제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회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인터넷회선의 신청 및 관리비용이 발생됨.
- 원패스 시스템은 입주민의 스마트폰(핸드폰) 사양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세대 내에는 무선AP는 통신기기의 사용위치에 따라 전파신호가 도달하지 않는 위치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창호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 예방하기 바람,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함.
- 각 세대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입주자가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에 의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발코니 또는 외부에 접하는 발코니 천장은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천장고가 낮음.
- 각 세대 주방렌지후드 상부장 내부에는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개별 주방 싱크대 인테리어 공사 시 계약자는 자동식소화기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성능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음.

## ■ 시설(유지관리) 관련사항

- 경관조명 및 각종 아파트 홍보시설물의 유지·보수로 발생하는 전기료, 시설보수비,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옥상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무단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시행자나 시공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입주 시 아파트 단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전도시공사에서 통보하는 입주자 안내문에 표기되어 있는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함. (단, 퇴거 시 환불함)
- 각 세대현관 앞 공용부분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전실 설치 등) 시 관련 법령에 의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음.
- 본 아파트의 평면은 발코니 확장형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발코니 확장형 미선택 세대는 확장형과 비교하여 공간 활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확장형 전시)과는 공간 상태와 내부 마감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체결하기 바람.
- 피난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함.
- 전열교환기는 각 세대에 설치되며, 필터의 유지관리비용이 발생됨.
- 비난방구역의 수전류 및 배관류, 배수구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및 동파될 수 있음.
- 급수·급탕 분배기는 화장실 천장에 설치되고,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됨.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일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설치가구(주방가구, 일반가구 등) 배면, 측면 및 상·하부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마루, 타일, 벽지 등)가 시공되지 않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는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변형 벽체는 조적벽체 또는 경량벽체(메탈스터드+석고보드)로 시공되며, 경량벽체의 경우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 견본주택 관련 유의사항

- 견본주택은 일정 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동일 주택형이라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견본세대에 설치된 내·외부 창호는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승인도서(단위세대 전등, 전열 배선도)의 단위세대 배선기기(스위치, outlet 등), 조명, 통신 단자함, 세대분전함의 위치, 수량, 사양 등은 견본주택에 따르며, 본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계·전기·통신·소방 기구류의 마감재에 대한 제품제원, 위치, 높이, 수량 등은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 및 옵션 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표현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실별 용도 및 면적,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옥상구조물의 형태나 주동 입면의 패턴, 색채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등에는 주택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편의를 위하여 약식으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견본세대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는 실제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사다리가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 사다리는 최하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설치됨.  
(동별 주출입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배치에 따라 최하층 세대가 2층인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견본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세대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재 및 견본세대 안내 영상홍보물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냉장고는 TBI형으로서 일반형을 설치할 경우 앞으로 돌출됨.

## ■ 기타 유의사항

- 각종 홍보안내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문구내용 등은 입주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람,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 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견본주택, 홈페이지, 분양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청약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입주일 통보시점 : 입주 30일전, 입주지정기간 : 90일 예정)
- 본 아파트의 명칭은 갑천2 트리풀시티 엘리프(영문 : Gapcheon2 Treefullcity ELIF)로 계약서에 명시하여 공급함.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함.

#### 4.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성능부분	성능범주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 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등급	1. 단지 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 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소방관련 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 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의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특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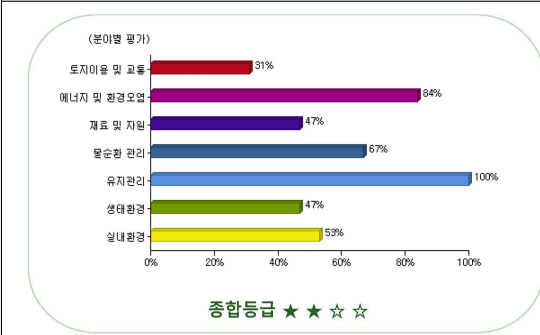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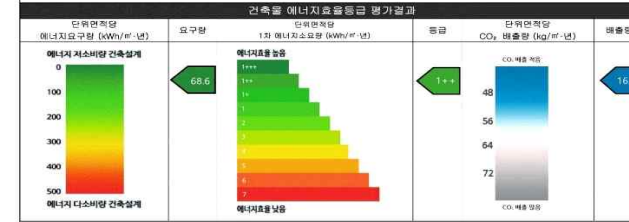
## 5.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 (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 (라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KS규격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라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

## 6.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div style="text-align: center;"> <h3>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h3> <p>1. 공동주택명 : 갑천지구 2BL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신청자 : 대전도시공사                  3.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 660 (갑천지구 2BL)                  4. 성능등급                  가. 소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경량벽역율 차단성능</td><td>★★★★</td></tr> <tr><td>2. 중앙냉각역율 차단성능</td><td>★★</td></tr> <tr><td>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td><td>★★★★</td></tr> <tr><td>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td>★</td></tr> <tr><td>5. 화장실 담배수 소음</td><td>★</td></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내구성</td><td>★</td></tr> <tr><td>2. 가변성</td><td>★★★★</td></tr> <tr><td>3. 수리용이성 권용부분</td><td>★★</td></tr> <tr><td>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td><td>★</td></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경량벽역율 차단성능</td><td>★★★★</td></tr> <tr><td>2. 중앙냉각역율 차단성능</td><td>★★</td></tr> <tr><td>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td><td>★★★★</td></tr> <tr><td>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td>★</td></tr> <tr><td>5. 화장실 담배수 소음</td><td>★</td></tr> </table> <p>라. 생활 환경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기존내외의 생태학적 가치</td><td>-</td></tr> <tr><td>2. 과도한 적하계발 적량</td><td>-</td></tr> <tr><td>3. 토양자 염도·성도량(양양기·추경기용 한양) 최소화</td><td>-</td></tr> <tr><td>4. 일조권 감소방지 대책의 타당성</td><td>-</td></tr> <tr><td>5. 에너지 성능</td><td>★★★★</td></tr> <tr><td>6. 에너지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장치</td><td>★</td></tr> <tr><td>7. 신·재생에너지 이용</td><td>★★★★</td></tr> <tr><td>8. 지반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td><td>★★★★</td></tr> <tr><td>9.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td><td>-</td></tr> <tr><td>10. 환경친선인 제품(EPPD)의 사용</td><td>★★</td></tr> <tr><td>11. 저탄소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td><td>-</td></tr> <tr><td>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td><td>★★★★</td></tr> <tr><td>16. 빗물 이용</td><td>★★</td></tr> <tr><td>17. 빗물 및 유출저하수 이용</td><td>★★</td></tr> </table> <p>가. 소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경량벽역율 차단성능</td><td>★★★★</td></tr> <tr><td>2. 중앙냉각역율 차단성능</td><td>★★</td></tr> <tr><td>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td><td>★★★★</td></tr> <tr><td>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td>★</td></tr> <tr><td>5. 화장실 담배수 소음</td><td>★</td></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내구성</td><td>★</td></tr> <tr><td>2. 가변성</td><td>★★★★</td></tr> <tr><td>3. 수리용이성 권용부분</td><td>★★</td></tr> <tr><td>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td><td>★</td></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td><td>★★★</td></tr> <tr><td>2. 대중교통의 근접성</td><td>★★★</td></tr> <tr><td>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td><td>★★</td></tr> <tr><td>4. 생활권시설의 접근성</td><td>★★</td></tr> <tr><td>5. 친환경형의 환경관리 계획</td><td>★★★★</td></tr> <tr><td>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대응일 제공</td><td>★★★★</td></tr> <tr><td>7. 사용자 매뉴얼 제공</td><td>★★★★</td></tr> <tr><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td><td>★★★★</td></tr> <tr><td>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td><td>★★</td></tr> <tr><td>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td><td>★</td></tr> <tr><td>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td><td>★★</td></tr> <tr><td>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td><td>★★</td></tr> <tr><td>13.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td><td>★★</td></tr> <tr><td>14. 광범위한 콘텐트</td><td>★★</td></tr> </table> <p>라. 화학·소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감지 및 경보설비</td><td>★★★</td></tr> <tr><td>2. 제연설비</td><td>★</td></tr> <tr><td>3. 소화설비</td><td>★</td></tr> <tr><td>4. 수평피난거리</td><td>★★</td></tr> <tr><td>5. 복도 및 계단 유류터미</td><td>★</td></tr> <tr><td>6. 피난설비</td><td>★★★</td></tr> </table> </div>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 11조 및 「주택법」 제 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 10월 25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부동산원</p>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벽역율 차단성능	★★★★	2. 중앙냉각역율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담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권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벽역율 차단성능	★★★★	2. 중앙냉각역율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담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내외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적하계발 적량	-	3. 토양자 염도·성도량(양양기·추경기용 한양) 최소화	-	4. 일조권 감소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지반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	10. 환경친선인 제품(EP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 이용	★★	17. 빗물 및 유출저하수 이용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벽역율 차단성능	★★★★	2. 중앙냉각역율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담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권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권시설의 접근성	★★	5. 친환경형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대응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	14. 광범위한 콘텐트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소화설비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류터미	★	6. 피난설비	★★★	<div style="text-align: center;"> <h3>녹색건축 예비인증서</h3> <p>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갑천지구 2BL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건축주 : 대전도시공사                  준공(예정)일 : 2022.10.31.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 660 (갑천지구 2BL)                  층수 : 지하2층, 지상20층                  연면적 : 199,325.5443㎡ (평가연면적: 198,659.8928㎡)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에이엔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디앤건축사사무소</p> <p>인증 개요                  인증번호 : G-SEED-P-2022-1185-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2.10.25.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날</p> <p>인증 등급                  인증등급 : 우형(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제 2021-278호, 환경부 고시 제2021-66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1.11.01.))</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형(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종합등급 ★★☆☆</p> </div>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 10월 25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부동산원</p> <p>※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h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h3>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재료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시) &lt;개정 2017.1.20&gt;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갑천지구 2BL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준공번호 : 20251031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 660 (갑천지구 2BL)                  층수 : 지하2층 / 지상20층                  연면적 : 199325.5443㎡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에이엔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p> <p>인증 개요                  인증번호 : 22-주-에-1+-0052                  평가자 : 에이엔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p> <p>인증 등급                  인증등급 : 1++등급</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p> <table border="1"> <tr><th>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sup>2</sup>·년)</th><th>요구량</th><th>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m<sup>2</sup>·년)</th><th>등급</th><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m<sup>2</sup>·년)</th><th>배출량</th></tr> <tr><td>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td><td>68.6</td><td>에너지효율등급</td><td>1++</td><td>48</td><td>16.7</td></tr> <tr><td>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용</td><td></td><td>에너지효율등급</td><td>1+</td><td>56</td><td></td></tr> <tr><td>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용</td><td></td><td>에너지효율등급</td><td>1</td><td>64</td><td></td></tr> <tr><td>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용</td><td></td><td>에너지효율등급</td><td>0</td><td>72</td><td></td></tr> </table> <p>■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p> <table border="1"> <tr><th>구분</th><th>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sup>2</sup>·년)</th><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sup>2</sup>·년)</th><th>1차 에너지소요량(kWh/m<sup>2</sup>·년)</th><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m<sup>2</sup>·년)</th></tr> <tr><td>냉방</td><td>0.0</td><td>0.0</td><td>0.0</td><td>0.0</td></tr> <tr><td>난방</td><td>29.6</td><td>38.2</td><td>29.1</td><td>6.5</td></tr> <tr><td>급탕</td><td>30.7</td><td>37.4</td><td>27.8</td><td>6.2</td></tr> <tr><td>조명</td><td>8.3</td><td>5.7</td><td>15.7</td><td>2.7</td></tr> <tr><td>환기</td><td></td><td>2.8</td><td>7.7</td><td>1.3</td></tr> <tr><td>합계</td><td>68.6</td><td>84.1</td><td>80.3</td><td>16.7</td></tr>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분할,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상화탄소 배출량</p> <p>※ 이 건물은 '냉방설비기' [ V ]설치되지않음(건축물임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재료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 10월 25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부동산원</p> </div>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 <sup>2</sup> ·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m <sup>2</sup> ·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 <sup>2</sup> ·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68.6	에너지효율등급	1++	48	16.7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용		에너지효율등급	1+	56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용		에너지효율등급	1	64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용		에너지효율등급	0	72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 <sup>2</sup> ·년)	1차 에너지소요량(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 <sup>2</sup> ·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9.6	38.2	29.1	6.5	급탕	30.7	37.4	27.8	6.2	조명	8.3	5.7	15.7	2.7	환기		2.8	7.7	1.3	합계	68.6	84.1	80.3	16.7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벽역율 차단성능	★★★★																																																																																																																																																																																																										
2. 중앙냉각역율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담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권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벽역율 차단성능	★★★★																																																																																																																																																																																																										
2. 중앙냉각역율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담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내외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적하계발 적량	-																																																																																																																																																																																																										
3. 토양자 염도·성도량(양양기·추경기용 한양) 최소화	-																																																																																																																																																																																																										
4. 일조권 감소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지반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																																																																																																																																																																																																										
10. 환경친선인 제품(EP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 이용	★★																																																																																																																																																																																																										
17. 빗물 및 유출저하수 이용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벽역율 차단성능	★★★★																																																																																																																																																																																																										
2. 중앙냉각역율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담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권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권시설의 접근성	★★																																																																																																																																																																																																										
5. 친환경형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대응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																																																																																																																																																																																																										
14. 광범위한 콘텐트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소화설비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류터미	★																																																																																																																																																																																																										
6. 피난설비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 <sup>2</sup> ·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m <sup>2</sup> ·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 <sup>2</sup> ·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68.6	에너지효율등급	1++	48	16.7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용		에너지효율등급	1+	56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용		에너지효율등급	1	64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용		에너지효율등급	0	72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 <sup>2</sup> ·년)	1차 에너지소요량(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 <sup>2</sup> ·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9.6	38.2	29.1	6.5																																																																																																																																																																																																							
급탕	30.7	37.4	27.8	6.2																																																																																																																																																																																																							
조명	8.3	5.7	15.7	2.7																																																																																																																																																																																																							
환기		2.8	7.7	1.3																																																																																																																																																																																																							
합계	68.6	84.1	80.3	16.7																																																																																																																																																																																																							

## 7.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공시 (단위 : 천원)

			구분	총액	비고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150,020,480	
			기간이자	1,759,456	
			필요적 경비	548,333	
			그 밖의 비용	10,066,563	
			계	162,394,832	
건축비	공사비	토목	토공사	14,463,433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1,739,516	
			석축공사	-	
			우수, 오수공사	2,802,044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도로포장공사	4,410,176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20,490,507	
			부대시설공사	2,821,538	
			공통가설공사	7,321,867	
			가시설물공사	1,647,419	
			지정 및 기초공사	37,780,835	
			건축	건축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62,782,084			
	용접공사	-			
	조적공사	3,789,065			
	미장공사	3,185,010			
	단열공사	2,745,700			
	방수, 방습공사	3,294,841			
	목공사	8,054,055			
	가구공사	10,067,568			
	금속공사	7,468,306			
	지붕 및 환통공사	585,748			
	창호공사	2,313,708			
	유리공사	332,412			

	기계설비	타일공사	2,745,700	
		돌공사	2,599,261	
		도장공사	2,617,567	
		도배공사	1,665,724	
		수장공사	494,227	
		주방용구공사	13,267,222	
		그 밖의 건축공사	439,313	
		급수설비공사	632,287	
		급탕설비공사	547,982	
		오수, 배수 설비공사	1,201,346	
		위생기구 설비공사	5,427,135	
		난방설비공사	6,744,402	
		가스설비공사	1,975,900	
		자동제어설비공사	289,797	
	특수설비공사	6,828,709		
	공조설비공사	-		
	전기설비공사	23,583,431		
	그 밖의 공종	정보통신공사	9,477,945	
		소방설비공사	12,883,313	
		승강기공사	3,240,473	
		일반관리비	6,121,861	
	그 밖의 공사비	이윤	3,670,649	
		계	304,550,076	
	간접비	설계비	3,471,215	
		감리비	1,982,339	
		일반분양시설통계비	5,308,565	
		분담금 및 부담금	4,490,715	
보상비		-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24		
계		15,252,858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32,756,180		
	합계	514,953,946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의거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택지비 가산비	12,374,353,729	8.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참조
건축비 가산비	32,756,180,920	

8.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계	법정 택지이자	재산세	말뚝박기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택지와 관련된 경비 지역난방부 담금	계	법정초과 복리시설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에너지절약 형 친환경주택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법령개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홈 네트워크	초고속 통신특등급	에어컨 냉매배관	기계 환기설비			
금액	12,374,353,729	1,759,456,629	548,333,450	5,403,160,560	3,176,670,695	1,486,732,395	32,756,180,920	2,112,063,122	9,675,068,517	3,102,896,140	5,703,046,440	5,739,087,900	4,549,906,891	918,347,430	955,764,480

### 9.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구역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갑천지구 2BL	대전도시공사 (314-82-03732)	계룡건설산업 (주) (314-81-07954) 파인건설 (주) (314-81-96613) 대국종합건설 주식회사 (249-86-01011) 신도종합건설 (주) (314-81-06289) (주) 동방종합건설건축사무소 (314-81-37818) 비에스건설 주식회사 (301-81-03573) 선우건설주식회사 (305-81-86111)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자체감리

### 10. 견본주택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

갑천2 트리폴시티 엘리프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위치안내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번지</li> <li>※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오시는 길 : 도안동 방면 시내버스 114, 115, 203 / 도안동 방면 급행버스 3번</li> <li>• 운영 기간 : 2022.11.07.(월) ~ 분양종료 시까지</li> <li>※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되오니 대표번호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견본주택과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a href="http://www.트리폴시티엘리프.com">http://www.트리폴시티엘리프.com</a>)</li> </ul>
<b>홈페이지</b>	<b>분양문의</b>
<a href="http://www.트리폴시티엘리프.com">http://www.트리폴시티엘리프.co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 042-546-5567</li> <li>• 운영시간 : 10:00~17:00</li> </ul>